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97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자안바이오㈜

2. 조치내용

□ **(원안의결)** 자안바이오㈜ 증권발행제한 3월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중요사항 기재누락

○ 회사는 '21.8.5. 이사회에서 경기도 안산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105억원(장부가 171억원*)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다음 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음

* 최근 사업연도말('20.12.31.) 자산총액(1,187억원)의 14.4%에 해당

나. 근거법규

□ 주요사항보고서(자산양수도) 중요사항 기재누락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1조 제1항 제7호, 제164조 제2항 제2호,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, 제429조 제3항 제1호,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, 제175조 제1호, 제176조의6 제1항 및 제4항